



안전관리

LPG차량 불법 구조변경 근절대책

이 자료는 가스안전 공사가 발간하는 「가스안전5·6월호」에 게재된 내용이다.

기본취지

IMF경제체제 이후 가솔린 등 자동차용 연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RV차량 등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불법구조변경하여 사용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LPG차량의 안전관리가 심히 우려된다는 언론보도나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사례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에너지수급 질서확립과 LPG차량 안전확보 차원에서 “LPG차량 불법구조 변경 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참고로 LPG차량은 2000년 2월 현재 853,800대(전체 차량의 7.5%)이며, '99년도에 유류차량을 LPG차량으로 구조변경한 대수는 76,117대('97년도의 3.5배)에 이르고 있다.

유 병 조 부장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장

LP가스 사용대상 및 구조변경 절차

자동차연료로서 LPG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LPG의 사용이 허용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LPG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RV차량(승합차) 등 LPG의 사용이 허용되는 차종에 한해 연료를 LPG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연료를 LPG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LPG용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된 신규차량을 구입하거나, LPG 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의 경우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기존 차량을 LPG사용 차량으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조변경승인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현실태 및 문제점

차량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절감을 위해 일반인에게는 LPG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99년 10월 한국가스안전공

사가 전국 256개 충전소에서 10,402대를 점검한 결과 16대가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PG차량의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점검능력만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구조변경한 차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연료장치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가스관련 안전교육도 미이수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어 자동차 사고시 응급처치 및 대응능력이 떨어져 가스사고의 위험성 및 피해가 높은 현실이다.

향후 추진방법

■ 단속 및 처벌 강화

매 분기 1회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행정관청과 합동으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자원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협조공문이 시달되면 행정관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이 수 여부도 확인하여 가스일반상식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결과 불법구조변경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에는 시설철거유도하고, 2차 적발시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1차 적발시에는 LP가스사용금지명령(액법 제29조제5항) 및 시설철거를 유도하고, 2차 적발시에는 지정한 기일 내에 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LP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액법 제29조) 미필사유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연료사용제한 규정(액범 제34조의3) 위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자동차 관리법 제34조) 위반에 관한 조치는 행정관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 불법구조 변경차량 식별 방법 체계화 추진

LPG사용차량임을 외부에 표시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LPG 구조변경차량에 대한 완성검사 합격필증 부착 위치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LP가스 충전 전에 충전원이 검사필증 및 불법구조 변경차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불법차량 단속에 대한 대대적인 매스컴 홍보 전개

자동차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는 운행중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토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가스충전시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토록 계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으로 구조변경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변경의 위험성, 단속내용, 단속결과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불법구조변경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P가스 충전소에 현수막 게시토록 협조함과 동시에 매스컴보도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배포와 반상회보 게재 등 행정관청의 협조를 통하여 불법구조변경차량 유통을 원천 봉쇄해 나갈 계획이다.